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21-100관련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. 12. .

발 의 자 : 김종선 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제10조의2 중 상품권 또는 기념품 지급 금액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가. 안 제10조의2 중 “5만원”을 “2만원”으로 수정함.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0조의2 중 “5만원”을 “2만원”으로 수정한다.

